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54
----------	-------

발의연월일 : 2025. 8. 25.

발의자 : 정동만 · 김은혜 · 추경호

배준영 · 정연욱 · 이인선

박성민 · 구자근 · 김성원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 파악과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따라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